

치과계의 새로운 발돋움



이재봉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62년 10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교수도 시험을 보라고 한다며 시험을 거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난 40년 동안 시행은 하지 못하면서,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 결의를 10회, 유보 결의를 9회 하였고, 전국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수차례 하고, 입법예고(안)도 3회나 공포되었고, 10여개의 명칭으로 20여회 위원회를 설립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개원가와 공직 회원들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이 조율이 되어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고 오늘 시행을 전제로 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라면 유보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199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때문에 사정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의사들도 시험 주체를 한의사협회에서 한방병원협회로 이관시키면서까지 전문의 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한치과 의사협회 48차 대의원 총회에서도 임시대의원 총회

(’99. 8. 10)에서 확대다수로 결의한 바 있으나 학생들이 전치특위를 구성하여 시위를 하고 치과의사 시민단체(회장 : 신동근)가 가세하여 범대위를 구성하면서 독자안을 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50차 대의원 총회에서 소수정예로 하되 협회에 재량권을 준다는 소수 정예안을 결의를 하여, 협회는 여러 차례의 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와의 조율 끝에 오늘 시행을 전제로 한 안에 대해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거기에 따르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얽히기 마련이며, 지난 40년간 유보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이해 득실이지만, 오늘의 결론을 이룬 것은 개원가, 공직 모두 기득권을 포기하고 젊은 후배 치과의사들이 국민 구강보건 향상 기여에 크게 공헌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1월 23일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행사는 치협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했다.

한 만큼 사소한 문제점들은 서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의 정원의 소수 원칙은 수련과 자격인정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하는 전공의 수를 8%에 맞춘다면 전 치과대학의 재학생 교육이 황폐화되고, 수련기관의 운영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사직하는 공직의사들 때문에 개원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발은 현행대로 하되 미국 보철학회 회원들의 경우처럼 개원을 목적으로 수련을 받는 사람들

**사소한 문제들은 서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면 앞으로 거세게
밀어 닥칠 의료시장 개방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직업인의 상을 후배들에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은 board-certificate 보다는 board-eligible을 택하게 하고, 교육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board-certificate를 하는 목표로 지도하면 양자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기관 지정에 있어서 기존 수련기관을 정비할 시간이 4년이 원칙이나 본 입법예고안은 2년밖에 남아 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필수 과목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구강외과가 필수 과목이면 입원실 조항을 삭제하던가, 학회차원에서 수련기관과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병실을 이용할 때 인정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수련병원 운영에 큰 도움을 주어 원가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또한 2년 후에 미비된 점은 병원장의 각서를 받아

인정을 해 주고 2년 동안 지도 감독한 다음 재평가하여 합격되면 그대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원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회장의 명을 받아 전공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병원신입업무를 수행할 부처를 지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의학회와 치과병원협회, 공직치과의사회가 협의를 하여 업무를 나누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구강보건과에서 작성한 규정안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부칙 3항에 7개항이나 고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수련은 한의사의 경우와는 달리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을 위시한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종합병원과 같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의사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세미나하는 경우도 많고, 봉급체계, 행정업무를 의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동안 의사, 치과의사의 수련에 관한 규정을 7개항이나 고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속에 포함시킨 다음 제5조 수련기관, 제6조 수련병원지정 기준 2개항만 수정하면 훨씬 법령 제정작업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서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면 앞으로 거세게 밀어 닥칠 의료시장 개방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직업인의 상을 후배들에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청회와 입법예고는 치과계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돋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